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년 1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이지영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위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지영	
건명	외무 공무원 법 개정	
소개년월일	2015년 1 월 27 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지영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5년 1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전 중 의견 된 안전 하나가 『외무공무원법』이었습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매년 5000년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171개의 해외 공관에 포함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단 6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외 국민 및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외무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재외공관에 포함시키도록 한다.</p> <p>외무공무원법에 관한 법률 제 33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33조 (재외공관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p> <p>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재외공관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는 연간 1인당 100건을 기준으로 파견한다.</p>		
<신설>	개정문	제 33조 (재외공관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재외공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는 연간 1인당 100건을 기준으로 파견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여행객 수는 약 1400만 명, 재외국민은 약 2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매년 타국에서 약 1,500 명씩 수감되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매년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 중에서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려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편 ‘the 300’에서 조사한 2014년 10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171개의 해외 공간에서 포함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단 6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재외공간에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키는 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안 33조 신설)

2. 주요골자

외무공무원법 제 33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3조(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171개의 해외 공관에 포함된 사건 사고 담당 영사가 단 6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그래서 저희 외교통상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변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33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는 연간 1인당 100건을 기준으로 파견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재외국가에 파견된 영사 수가 사건 발생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실질적으로 대처과정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 33조 (재외공관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재외공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건 및 사고 담당 영사는 연간 1인당 100건을 기준으로 파견한다.

청원인 성명 : 이 지 영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